현장목소리 뉴미디어
뉴스클레임

[단독] 관내사업 보도 언론인 고소 서준오 노원구 '불송치·불기소에 또 패소'

최서영 기자 | 승인 2026.10.02 15:58

노원구청 "유감스러운 결과, 항소 검토 중"
사업 관련 대집행서 장애 얻은 구민... 노원구청 "이제는 상관 없는 사건"

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

제 1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6가합20035 정정보도청구의 소

원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

대표자 구청장 서준오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

피 고 김상민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26. 9. 17.

판 결 선 고 2026. 10. 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노원구와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2026년 10월 1일 패소했다. 최서영 기자

[뉴스클레임]

2022년 노원구청 동일로 간판 교체 사업 비판 언론보도 정정 민사소송을 건 노원구와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1일 패소했다. 원고 측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언론인을 형사 고소도 했으나, 최근 불송치와 불기소로 일단락된 바 있다.

앞서 노원구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'동일로 일대 간판 개선사업'을 실시했다. 공릉역부터 태릉입구역까지 153개 업소 179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다.

2일 <뉴스클레임>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, 김상민 열린시민뉴스 발행인은 2025년 11월 2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 간판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. 이 사업에 주민위원장 명의의 문서들이 허위 작성됐고, 이를 통해 약 5억8000만원의 예산이 허위 집행됐으며, 오 전 구청장의 향우회 지인 회사인 양지기업이 일감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.

오 전 구청장 등은 김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(명예훼손),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. 그러나 노원경찰서는 2026년 5월 불송치를, 서울북부지방검찰은 2026년 6월 불기소를 결정했다.

더 나아가 오 전 노원구청장과 노원구는 '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'는 취지로 주장하며,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2026년 1월 제기했다.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.

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△사문서 위조 증거 등을 김 발행인이 대지 못하고 있으며 △양지기업이 타 설계업체와 단독응찰해 정당하게 일감을 받아갔으며 △예산 집행도 적법했다는 주장을 폈다. 오 전 구청장이 2026년 6월 퇴임한 후에는 서준오 현 노원구청장이 원고 지위를 건네받아 소송을 이어갔다.



서울노원경찰서

2026. 5. 8.

사건번호 2025-010464

제 목 불송치 결정서

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.

Ⅰ. 피의자

김상민

Ⅱ. 죄명

가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

나. 명예훼손

Ⅲ. 주문

가. 불송치 -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
나. 불송치 -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

노원구청 측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불송치이유서. 출처=경찰청

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(재판장 장용범, 판사 김진아·박지상)는 노원구, 서 구청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(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합20035)하고,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2026년 10월 1일 명했다. 경찰,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원고 측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.

쟁점이 된 기사의 표현은 '고발장에 따르면 주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수의계약 요청서, 선급금 및 준공금 지급요청 공문이 위원장 본인도 모르게 작성·제출되었으며, 약 5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허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.'였다.

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"'원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혹이 기재되어 있다'는 상황을 전달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, 이를 두고 피고가 '원고 측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, 예산을 허위로 집행하였다'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다.

또한 "한편 위 표현 중 '양지기업은 오승록 구청장의 향우회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'라는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, 원고는 위 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"며 의문을 제기했다.

마지막으로 "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의견 표명 또는 이 사건 단체가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의 정보 전달 수준의 기사로 보일 뿐"이라면서 "특정인, 특히 원고와 같은 공적 단체 및 원고 소속 공무원과 같은 공적 인물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언론보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"고 판시했다.

김 발행인은 "동일로 간판개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초 계획안보다 많은 혈세가 투입되기도 했다"면서 "양지기업이 오 전 구청장 향우회 지인 것이 아니라고 말 '안' 하는 것이 아니라, '못' 하는 것으로 보인다"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"열린시민뉴스는 수많은 제보와 녹취, 증거를 기반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보도했으며, 이를 기반으로 고소에 맞서고 있다"며 "전 구청장 개인의 소송을 현 구청장이 승계해 노원구 혈세로 진행하는 것이 온당한지, 배임 여부를 검토해 추가 고발할 계획"이라고 예고했다.

노원구는 본지에 "유감스러운 결과다. 항소를 검토 중"이라며 "이 사안은 노원구의 사안이지 전 구청장의 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, 현직 구청장이 노원구의 소송을 승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"는 입장을 전해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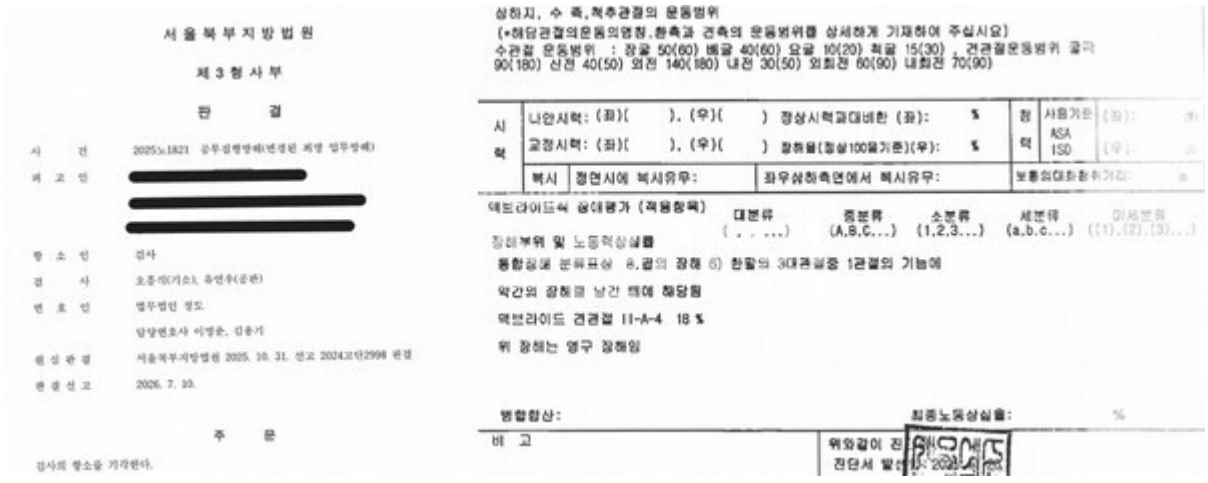
서울북부지방법원

제3형사부

판 결

사 건 2025노1821 공무집행방해(변경된 죄명 업무방해)

피 고 인 [redacted]

항 소 인 검사

검 사 오종석(기소), 유연우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

담당변호사 이영준, 김동기

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. 10. 31. 선고 2024고단2998 판결

판결선고 2026. 7. 10.

주 문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상하지, 수 족,척추관절의 운동범위
(*해당관절의운동의명칭,환측과 건측의 운동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)
수관절 운동범위 : 장굴 50(60) 배굴 40(60) 요굴 10(20) 척굴 15(30) , 견관절운동범위 굴곡 90(180) 신전 40(50) 외전 140(180) 내전 30(50) 외회전 60(90) 내회전 70(90)

시력	나안시력: (좌)( ), (우)( ) 정상시력과대비한 (좌): %		청력	사용기준 ASA ISO
	교정시력: (좌)( ), (우)( ) 장해율(정상100을기준)(우): %			
	복시 정면시에 복시유무:	좌우상하측면에서 복시유무:		보통의대화청취거리:

액브라이드식 장애평가 (적용항목)
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	미세분류
(. . ...)	(A,B,C...)	(1,2,3...)	(a,b,c...)	((1),(2),(3)...)

장해부위 및 노동력상실률

통합장해 분류표상 8.관의 장해 6)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

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됨

액브라이드 견관절 II-A-4 18 %

위 장해는 영구 장해임

병합합산: 최종노동상실률: %

비 고

위와같이 진단서 발행 2025.

노원구민 김 모 씨가 업무방해죄 무죄를 받은 2심 판결문(왼쪽). 김 씨가 행정대집행 중 영구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서(왼쪽). 출처=법원, 독지가 제공.

현재 동일로 간판 개선사업은 수많은 소송과 논란에 휘말려 있다.

일례로 한 노원구민이 간판 철거 과정에서 영구 장해를 입고도 되레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귀금속 소매업자 김 모 씨는 2024년 5월 21일 가게 간판을 철거하러 온 사다리차 크레인 작업발판에 올라갔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. 김 씨는 그 과정에서 회전근개 손상, 척골·요골 골절을 당했으며, 결국 팔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.

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오흥식 검사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고, 이후 혐의를 업무방해죄로 바꿔서 공소를 이어갔다. 김 씨가 크레인에 올라가 25분간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.

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(재판장 허명산, 판사 박지은·김성은)은 1심(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998)에 이어 검사 항소를 물리치고 김 씨에게 무죄를 2026년 7월 10일 선고(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1821)했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재판부는 CCTV 증거영상을 분석해 "(피고인이 크레인에 올라간 시간은) 2분 30초 정도에 불과하고,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, 협박, 유형력 행사 등을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"며 공소를 단호히 물리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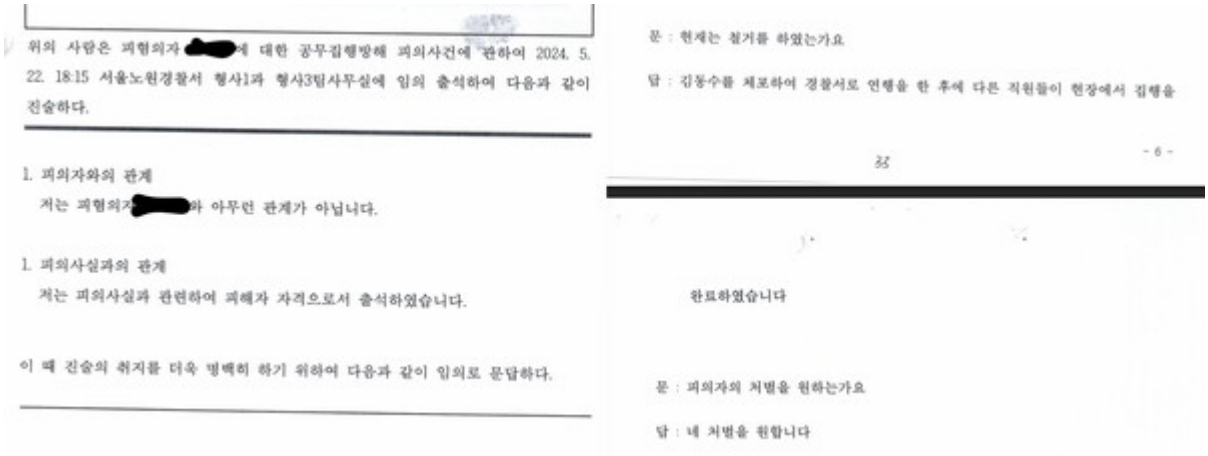

위의 사람은 피의의자 [redacted]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. 5. 22. 18:15 서울노원경찰서 형사1과 형사3팀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.

1. 피의자와의 관계
저는 피의의자 [redacted]와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.

1. 피의사실과의 관계
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.

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.

문 : 현재는 철거를 하였는가요

답 : 김동수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을 한 후에 다른 직원들이 현장에서 집행을

- 6 -

완료하였습니다

문 :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

답 : 네 처벌을 원합니다

노원구청 도시경관과장 양 모 씨의 2024년 진술조서. 동일로 간판개선사업 담당자였던 그는 2024년 5월 22일 노원경찰서에 출석해 노원구민 김 모 씨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. 출처=경찰청

현재 김 씨는 자신을 연행했던 경찰관들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상태다.

김 씨 고소장에 따르면, 사업 당시 김 씨 가게의 간판은 서울시 조례에 비춰 합법이었다.

김 씨는 "간판업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며, 많은 업주들이 불필요한 간판 개선에 응해야 했다"는 취지의 내용, "경찰관 4명이 자신의 뒷다리를 걸어 뒷수갑을 채우며 독직폭행한 후 노원경찰서에 구금했다"는 취지의 내용 등을 고소장에 기재한 상태다.

이 사건에 대해 노원구는 "공소는 노원구가 아니라 검사가 한 것이며, 검사가 김 씨의 혐의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업무방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노원구 공무원들은 사건에서 빠졌다"면서 "노원구와는 상관 없는 사건이 돼 2심 결과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"라고 선을 그었다.

다만 본지가 입수한 노원경찰서 진술조서에 따르면, 간판사업 담당자였던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민 김 씨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.

노원구청 도시경관과장 양 모 씨는 2024년 5월 22일 노원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을 "피해자"로 칭하면서 "네 처벌을 원합니다"라고 말한 바 있다. 애초에 이 같은 움직임이 없었다면 노원구민 김 씨는 소송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아도 됐다.


최서영 기자 csy@newsclaim.co.kr

저작권자 ©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